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.

제출일 : 파주시장

☐ 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조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,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련조례 표준안과 상치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해 나가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은 “총무국장”에서 “건설국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은 “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”에서 “재난방재담당”으로 조정(안제5조)

나.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(안제8조)

다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“3월이내”에서 출납폐쇄후 “80일 이내”로 조정(안제9조)

라. 기금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기한 및 기금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(안제9조)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동조 제2항중 “충무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, “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재난방재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내지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)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중전 제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기금결산)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건설과 ☎940-4119
입안자	건설과장	김영구
	재난방재담당	우상명
	담당자	이득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헌 행	개 정(안)
제5조(회계공무원) ②기금운용관은 “ <u>총무국장</u> ”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“ <u>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</u> ”가 된다.	제5조(회계공무원) ②기금운용관은 “ <u>건설국장</u> ”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“ <u>재난방제담당</u> ”이 된다.
(<u>신설</u>)	제8조(기금운용계획)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8조(결산 및 보고)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“3월이내”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“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	제9조(기금결산)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